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2가합559380 판결 [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고

담당변호사 이종업

피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천혜진, 이창민

변론 종결2024. 10. 25.

판결 선고2024. 1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2022. 11. 15.까지는 연 5.26%, 그 다음날부터 2024.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9,190,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B은 평택시 C에 소재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20. 9.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예정금액 2,070,000,000원, 보증원금 1,863,000,000원(보증비율 90%), 보증기한 2030. 9.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았다.

2) 위 신용보증서의 전면 특약란에는 "해당 시설인 기계(기계명세 하단 별도 표시) 설치 즉시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에 따른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위 특약란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그 밑에 다음과 같은 의료기기 목록이 기입되어 있다(이하 아래 목록에 기재된 의료기기를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하고, 이 사건 의료기기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각 순번에 따라 '○번 의료기기'라 한다).

의료기기 목록

- ① PHILIPS MRI ACHIEVA 1.5T 16ch. 1Sys.
- ② TOSHIBA 128 Slice CT Scanner AQUILION CX. 1Sys.
- ③ OLYMPUS ENDOSCOPE LUCERA Cv-260. 3Sys.
- ④ 디지털 통합의료영상정보화시스템(PACS PLUS Solution). 1 Set.
- ⑤ 디지털 X-ray 시스템(Innovision-DX)
- ⑥ 골밀도 진단기(DEXXUMT). 1Sys.
- ⑦ C-arm X-ray 시스템(Prostar 43). 1Sys

⑧ Dental CT & X-ray 시스템(Point 3D Combi 500S). 1Sys.

⑨ 유방암촬영기(DMS Giotto). 1Sys

3)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2020. 9.

16. B과 사이에 여신개시일 2020. 9. 7., 여신기간만료일 2030. 9. 10., 여신금액

2,070,000,000원, 이자율을 3개월 KORIBOR + 2.06%, 지연배상금률을 이자율 + 3%로 하는

기업시설 일반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B과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다음 날

B에게 위 금액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고, 2020. 9. 23. 공증인가 E에서 위 양도담보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제10475호)를 취득하였다(이하에서는 위 절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이라

한다) 및 면책기준(이하 '이 사건 면책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5조(보증특약)

① 보증특약은 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 생략)

④ 채권자는 대출실행, 담보취득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증특약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3조(면책)

① 피고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세부내용 및 면책범위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이 사건 면책기준

1.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가.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1)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	"보증특약상의 보증해지요구금액"과 "보증특약상의 담보미취득으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및 종속채무	□ 보증특약에 보증해지 요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특약상의 담보미취득으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종속채무"를 면책함 □ 보증특약상의 담보미취득으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 계산방법 1. 담보미취득 물건의 담보가액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아래 감정가격 또는 경매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적은 금액 (중략)나. 위 감정가격 또는 경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금액(1) 당해시설인 경우에는 소요자금총액(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상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공제함)(11) 위 "(1)" 부터 "(10)" 까지 이외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의 경우로 보증특약 액 및 종속채무를 위반한 때
---	---	--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이후 B이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여 2021. 8. 18.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9. 8.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21. 10. 2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의 의료기기 감정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와 이 사건 의료기기가 동일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F(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에게 감정 및 시세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 및 시세 조사에 따라 작성된 2021. 11. 23. 자 기계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 및 2021. 12. 16. 자 시세 조사 보고서(이하 '이 사건 시세조사보고서'라 한다)는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1	PHILIPS MRI ACHIEVA 1.5T 16ch	PHILIPS MRI ACHIEVA 1.5T 8ch	760,000,000	500,000,000	150,000,000	재제조
2	TOSHIBA 128 Slice CT Scanner AQUILION CX	TOSHIBA Scanner AQUILION TSX-101A	550,000,000	300,000,000	100,000,000	재제조
3	OLYMPUS ENDOSCOPE LUCERA Cv-260. 3Sys.Gastroscope (GIF-H260): 9EAColonoscope (CF-H260): 6EA	OLYMPUS ENDOSCOPE LUCERA CV-260 2대CSV-260 1대동일동일	390,000,000	130,000,000 [시스템(3Sys) 10,000,000 위, 대장 scope(15EA) 12,000,000]	31,300,000 [CV-260 2대 6,000,000 CLV-260 4,000,000 위, 대장 sc	재제조

1	PHILIPS MRI ACHIEVA 1.5T 16ch	PHILIPS MRI ACHIEVA 1.5T 8ch	760,000,000	500,000,000	150,000,000	재제조
					ope(15EA) 21,300,000]	
4	디지털 통합의료영상정보화시스템 (PACS PLUS Solution)	G(PACS Solution)	95,000,000	90,000,000	760,000	H에서 구축한 통합의료영상정보시스템 설치됨
5	디지털 X-ray 시스템 (Innovision-DX)	Innovision-D X	142,000,000	15,000,000	2,000,000	중고제품 (2010.4.)
6	골밀도 진단기(DEXXUM T)	DEXXUM T	100,000,000	20,000,000	10,000,000	신품 (2020.5.)
7	C-arm X-ray 시스템 (Prostar 43)	Prostar	120,000,000	50,000,000	25,000,000	신품 (2020.6.)
8	Dental CT & X-ray 시스템 (Point 3D Combi 500S)	Point 3D Combi 500	85,000,000	28,000,000	14,000,000	신품 (2020.6.)
9	유방암촬영기 (DMS Giotto)	Giotto Image MD	58,000,000	15,000,000	3,000,000	중고제품 (2010.5.)
합계	2,300,000,000	1,148,000,000	336,060,000			

라. 피고의 면책 주장 및 나머지 보증금 지급

1)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 중 4번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기에 관하여 이 사건 면책기준의 면책사항 중 1. 가. (1)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위 면책기준의 운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기 중 4번 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기(이하 '계쟁 의료기기'라고 한다)의 계약서상 매입금액 2,205,000,000원에서 법인세법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 894,788,510원을 공제한 가액 1,310,211,490원에 보증비율 90%를 곱한 금액 1,179,190,341원을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으로 보아 위 1,179,190,341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는 면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계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4. 5.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금 1,863,000,000원에서 위 면책금액 1,179,190,341원을 공제한 683,809,659원 및 위 공제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19,086,34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원금 1,863,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사실, 원고가 2020. 9.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피보증인 B에게 2,07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2021. 8. 18.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2022.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원금 중 683,809,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5.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보증채무 원금 1,863,000,000원에서 피고가 이미 변제한 원금 683,809,659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9,190,341원(1,863,000,000원 - 683,809,659원)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의료기기 중 1, 2, 3번 의료기기는 이 사건 의료기기 목록에 명시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재제조품4)에 해당하고, 위 목록상의 모델명과 실제 모델명이 다르거나(2번 의료기기 및 3번 의료기기 중 일부), 저사양에 해당한다(1번 의료기기). 또한 5, 9번 의료기기의 경우 실제로는 중고제품에 해당하고, 6, 7, 8번 의료기기의 경우 그 감정평가액이 계약서상 매입금액의 20~40%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계쟁 의료기기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세부적으로는 이 사건 제23조 제2항, 이 사건 면책기준 1. 가. (1)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정한 운용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중 1,179,190,341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는 면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면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당해시설을 설치하는 즉시 이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의 목적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은행으로서 위 특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을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계쟁 의료기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얻게 되는 주채무자 B에 대한 구상권이 침해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에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기준 및 구체적인 면책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살피기로

한다).

가) 1, 2, 3번 의료기기

(1)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1, 2, 3번 의료기기가 신품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1, 2, 3번 의료기기에 대응하여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설치된 의료기기는 중고품을 회수한 후 재조립하여 제작한 재제조품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이 사건 의료기기 목록에는 1, 2, 3번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명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각 의료기기가 재제조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제조품의 경우 신품의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기기 목록에 재제조품이라고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1, 2, 3번 의료기기의 신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취득을 요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1, 2, 3번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1, 2, 3번 의료기기의 명칭 뒤에 '(Refur.)'라는 기재가 있고, 증인 B은 '위 계약서에 적혀있는 Refur.는 Refurbish로 재제조품을 의미한다.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하여 상세히 조사했으며, 1, 2, 3번 의료기기가 리퍼브 제품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당시 이 사건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하여 위 계약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설명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의료기기가 신품이 아니라 재제조품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서면증언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서 발급 및 이 사건 대출계약 과정에서 위 각 의료기기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그 서면증언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B은 9번 의료기기가 중고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2024. 1. 30. 자 서면증언 제11면 참고) 이에 대해서도 피고에게 설명하거나 사전에 알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신용보증서는 물론 이를 발행받는 과정에서 B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갑 제7호증)에도 위 물품이 중고품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계약서에 기재된 Refur.이 Refurbish의 약칭으로 리퍼브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약칭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통상적으로 리퍼브 제품(손질상품)은 불량 제품, 전시되었던 제품, 소비자의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 등을 다시 손질하여 소비자에게 정품보다 싸게 파는 것을 가리키는데, 위 각 의료기기는 중고품을 재제조한 것으로 이를 리퍼브 제품이라고만 표기한다고 해서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하면 B이 피고에게 위 각 의료기기가 신품이 아니라 재제조품임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 B의 서면증언이 있기 전까지는 위 1, 2, 3번 의료기기가 재제조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바(2023. 7. 3. 자 준비서면 등 참조), 원고 역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1, 2, 3번 의료기기가 신품이라는 인식하에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이 사건 감정서에 의하면 재제조품임을 전제로 한 1, 2, 3번 의료기기의 감정평가액(시세평가액)은 각 500,000,000원, 300,000,000원, 130,000,000원으로, 계약서상 매입금액의 약 65%, 54%, 33%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각 의료기기의 실제 가액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초가 된 계약서상 매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특히 1번 의료기기의 경우 이 사건 의료기기 목록에는 그 사양이 16채널(ch)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감정서에 의하면 그 실제 사양은 8채널(ch)로, 이 사건 특약에 기재된 사양보다 낮은 사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감정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서의 바탕이 된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감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1번 의료기기의 사양이 16채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증인 B의 서면증언(증인 B은 위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한 별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서의 기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로서는 1, 2, 3번 의료기기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품인지, 아니면 재제조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 각 의료기기의 계약서상 매입금액이 실제 시장 가격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1, 2, 3번 의료기기에는 제품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제품 라벨에는 장비의 생산년도, 재제조원, 중고의료기기 제조년월, 품목허가번호 등이 부착되어 있어 위 각 의료기기가 재제조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B에 대한 대출 실행 이전에 이 사건 의료기기의 사진 촬영을 하고 2020. 10. 6.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스티커를 부착하였을 뿐, 위 각 의료기기가 신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의 시세조사나 감정평가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양도담보권 취득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요구한 신품이 아닌 재제조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의료기기의 계약서상 매입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의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특히 일부 물품(1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비해 낮은 사양의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원고는 피고의 내부 규정(을 제5호증의3,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을 근거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의료기기를 현장 실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위 내부 규정의 문언을 비롯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현장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의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5) 원고의 특약내용별 업무처리방법(갑 제15호증의 2)에 의하면, 양도담보를 취득하도록 하는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양도담보는 반드시 견질담보로 담보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의 여신업무매뉴얼(갑 제15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담보를 취득할 때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견질담보로 운용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양도담보를 취득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하는 점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은 내부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5, 9번 의료기기

앞서 살펴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5,9번 의료기기가 신품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5,9번 의료기기에 대응하여 이

사건 병원에 실제로 설치된 의료기기는 중고품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의료기기의 감정평가액은 각 15,000,000원으로, 계약서상 매입금액의 약 10%, 25%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각 의료기기의 실제 가액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초가 된 계약서상 매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5, 9번 의료기기에 제품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제품 라벨에는 장비의 제조년월, 품목허가번호 등이 부착되어 있어 위 각 의료기기가 중고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각 의료기기가 신품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의 시세조사나 감정평가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양도담보권 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요구한 신품이 아닌 중고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의료기기의 계약서상 매입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의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6, 7, 8번 의료기기

6,7,8번 의료기기의 감정평가액(시세평가액)은 각 20,000,000원, 50,000,000원, 28,000,000원으로, 계약서상 매입금액의 약 20%, 42%, 33% 정도에 불과하여 위 각 의료기기의 실제 가액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초가 된 계약서상 매입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각 의료기기에 대한 별도의 시세조사나 감정평가 없이 대출을 실행하고 양도담보권 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기초가 된 위 각 의료기기의 계약서상 매입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의 물품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면책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적용기준 및 계산방법 가) 피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쟁 의료기기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기준 1. 가. (1)의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운용방법에 따라 면책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계쟁 의료기기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기준 1. 가. (11)의 '위 "(1)"부터 "(10)"까지 이외의 경우로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기준에 따라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 및 종속채무'를 면책금액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계쟁 의료기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 자체는 취득하였는바, 아예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피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약관 제20조(담보대위 등)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의료기기에 보증비율(90%)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권을 이전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계쟁 의료기기 전체의 담보가액을 면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이 사건 면책기준 중 1. 가. (5)의 '제3자가 담보권설정, 가압류한 이후에 담보권을 취득한 때'에는 '제3자의 담보권설정금액 또는 가압류청구금액' 및 그에 대한 종속채무를, 1. 가. (7)의 '채권자가 담보권 설정 요구금액에 못 미치게 담보권을 설정한 때'에는 '설정요구금액에서 담보권설정금액을 뺀 금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각 면책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채권자가 피고가 요구하는 수준의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담보권이 목적이 된 물건 전체의 담보가액을 면책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을 반영하여 면책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계쟁 의료기기에 대하여 이 사건 면책기준 1. 가. (1)의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1. 가. (2)에서 (10)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채무불이행이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책기준 1. 가. (11)에 따른 면책금액인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 및 종속채무'에서의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피고가 보증특약상 기재된 계쟁 의료기기에 대한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담보가액(① 금액)'에서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계쟁 의료기기에 대한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었던 담보금액(② 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면책기준에 의하면 피고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의 '담보미취득 물건의 담보가액'에 대하여 감정가격 또는 경매가격이 없는 경우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총액에서 법인세법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담보가액으로 보고 이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책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계쟁 의료기기에 대한 감정가격 또는 경매가격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 금액을 '① 금액'으로 보고,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세조사보고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계쟁 의료기기에 대한 중고시세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② 금액'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기준 1. 가. (11)에 따라 '피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결국 '계쟁 의료기기의 소요자금총액(계약서상 매입금액)에서 법인세법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에 보증비율인 90%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설치된 계쟁 의료기기의 중고시세에 90%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2) 면책금액의 계산 이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의 면책금액은 877,420,341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이다.

<계산 방식>

(1) 계쟁 의료기기 소요자금총액 2,205,000,000원(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계약서상 매입금액 2,300,000,000원 - 4번 의료기기의 계약서상 매입금액 95,000,000원)

(2) 법인세법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액 : 894,788,510원

- 양도담보 취득일 : 2020. 9. 17.

- 신용보증부실사유(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 : 2021. 8. 18.

-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2020. 9.	2,205,000,000	0.451	4	331,485,0006) 2,205,000,000원 × 0.451 × 4/12
2021. 8.	1,873,515,000	8	563,303,5107) 1,873,515,000원 × 0.451 × 8/12	
감가상각액 합계	894,788,510			

- (3) 계쟁 의료기기 담보가액 : 1,310,211,490원(2,205,000,000원 - 894,788,510원)
- (4) 피고가 계쟁 의료기기에 대한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담보가액(① 금액) : 1,179,190,341원(1,310,211,490원 × 보증비율 90%)
- (5) 계쟁 의료기기의 신용보증부실사유 발생일 당시 실제 시세 : 335,300,000원(이 사건 의료기기의 이 사건 시세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시세조사액 336,060,000원 - 4번 의료기기의 이 사건 시세조사보고서 작성 당시 시세조사액 760,000원)
- (6)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실제로 계쟁 의료기기에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었던 금액(② 금액): 301,770,000원(위 335,300,000원 × 보증비율 90%)
- (7)면책금액 : 877,420,341원[① 금액 1,179,190,341원 ② 금액 301,770,000원]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보증채무원금 301,770,000원(= 보증원금 1,863,000,000원 - 면책금액 877,420,341원 - 피고가 이미 보증채무 원금에 변제한 금액 683,809,6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 이후인 2021.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11. 1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26%의 비율로 계산한 돈8) 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9)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세라

판사김민지

판사박재남

1) 이 사건 의료기기 목록의 내용과 동일하다.

2) 이 사건 의료기기에 대한 매입 당시의 시세(신품의 경우는 신품 시세, 재제조품의 경우 재제조품

시세, 중고품의 경우 중고품 시세)를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시세조사보고서 작성 당시(2021. 12. 16.)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의료기기에 대한 중고시세를 평가한 것이다.

4) 고장·폐기·교환된 물건을 회수해 분해·세척·보수·재조립해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다시 만들어진 제품

5)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6) $2,205,000,000\text{원} \times 0.451 \times 4/12$

7) $1,873,515,000\text{원} \times 0.451 \times 8/12$

8) 원고는 2021.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보증채무 원금에 대한 종속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상 위 보증채무에 대한 지연배상금률은 '이자율(3개월 KORIBOR + 2.06%) + 3%'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2021. 9. 7.부터 2022. 11. 15.까지의 3개월 KORIBOR가 0.2%를 초과함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2021. 9. 7.부터 2022. 11. 15.까지의 지연배상금률이 5.26%를 초과하는 것(0.2%를 초과하는 3개월 KORIBOR + 2.06% + 3%)은 계산상 명백하다.

9)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피고에게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한다.